

제410회국회  
(정기회)

##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 2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3년12월7일(목)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747)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8)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0)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9)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770)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1)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4)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58)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0)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43)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27)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16)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4)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5)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5)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4)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9)
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46)
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39)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62)
2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31)
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3)
2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3)
2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50)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4)
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24)
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6)
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19)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8)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7)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2)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6)
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04)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38)
35.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35)
3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2)
3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3)
3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43)
3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6)
40.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2)
4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8)
42.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7)
4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4)
44.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6)
4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7)
4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4)
47.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7)
48.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1)
49.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3)
5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8)
51.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5)
52.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6)
53.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71)
54.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72)
5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33)
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81)
5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72)
5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57)
5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16)
6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4)
6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4)
6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5)
6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5)
6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1)

## 상정된 안건

1. 공공채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747) .... 4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8) ..... 4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0) ..... 4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9) ..... 4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770) ..... 4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1) ... 13

|                                                                  |    |
|------------------------------------------------------------------|----|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4) …       | 13 |
|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58) …       | 13 |
|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0) …       | 13 |
|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43) …      | 14 |
|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27) …      | 14 |
|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16) …      | 14 |
|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4) …      | 14 |
|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5) …      | 14 |
|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5) …      | 14 |
|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4) …      | 14 |
|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9) …      | 14 |
| 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46) …       | 14 |
| 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39) …       | 14 |
|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62) …       | 14 |
| 2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31) …       | 14 |
| 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3) …       | 14 |
| 2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3) …       | 14 |
| 2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50) …       | 14 |
|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4) …      | 14 |
| 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24) …        | 14 |
| 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6) …        | 14 |
| 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19) …        | 14 |
|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8) …        | 14 |
|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7) …        | 14 |
|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2) …        | 14 |
|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6) …        | 14 |
| 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04) …        | 14 |
|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38) …        | 14 |
| 35.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35) …    | 14 |
| 3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2) …       | 14 |
| 3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3) …       | 14 |
| 3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43) …             | 14 |
| 3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6) …       | 14 |
| 40.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2) … | 14 |
| 4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8) …       | 14 |
| 42.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7) …                    | 14 |
| 4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4) …       | 14 |
| 44.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6) …  | 14 |
| 4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7) …       | 14 |
| 4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4) …       | 14 |
| 47.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7) …    | 14 |
| 48.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1) …             | 14 |
| 49.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3) …   | 14 |
| 5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8) …       | 14 |

|                                                                      |    |
|----------------------------------------------------------------------|----|
| 51.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5) .....          | 14 |
| 52.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6) ..        | 14 |
| 53.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71) ....        | 15 |
| 54.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72) .....            | 15 |
| 5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33) ....       | 15 |
| 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81) ....       | 15 |
| 5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72) ..... | 15 |
| 5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57) ..... | 15 |
| 5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16) ..... | 15 |
| 6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4) ..... | 15 |
| 6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4) ..... | 15 |
| 6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5) .....              | 15 |
| 6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5) .....              | 15 |
| 6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1) .....              | 15 |

(10시20분 개의)

○소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5건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59건의 법률안입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출석하셨습니다. 발언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설명을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747)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8)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0)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9)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770)

(10시22분)

○소위원장 윤한홍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부분입니다.

개정안에는 부정이익등의 환수 시 이자환수의 합리적 조정 등 총 6건의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이익등의 환수 시 이자 환수의 합리적 조정 등입니다.

개정안은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환수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환수 규정은 있으나 이자 부과 규정이 없는 경우 이자 부과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2조 8호의 정의 규정 중 부정수익자에서 각급 국립·공립 학교를 제외하는 것은 이를 현행법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와 관련해서 제2조제6호라목은 같은 호 가·나·다목의 거짓 청구나 법령 등 위반에 따르지 않은 사용과 달리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안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귀책사유라는 합리적 기준으로 부정이익등을 합리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법률에 환수 규정은 있으나 이자 부과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이자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2항의 개정 또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권익위원회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권익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학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부정수익자에 포함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공립학교가 부정수익자가 되는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에 충당하는 금액은 결국 예산편성을 통해 납부해야 할 것이므로 재원이 같아 이를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수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시 이자까지 부과하는 현행 규정에 대한 민원 등이 다수 야기된 점을 고려할 때, 규정 개정 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정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별법에 환수 규정은 있으나 이자 부과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여 이자 부과 시 공공재정의 건전성 제고 및 부정수급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병덕 위원 쟁점이 전문위원님 검토요지하고 권익위의 의견 중에서 갈리는 부분이 귀책사유 없는 경우 대정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자 환수하지 말자, 그리고 환수규정 없을 때 부과 규정 이것을 준용하자 이것은 동일하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여기를 포함할 것인지 말 건지에 대해서만 견해가 나뉘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아닙니다. 그 부분도 견해가 일치합니다.

○민병덕 위원 말씀해 보세요. 저는 나뉜다고 금방 들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지금 제외하자는 것이 국공립학교를 부정수익자에 포함시켰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국공립학교가 국가의 영조물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하고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같은 주머니에서, 환수하는 것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고 다시 돈을 주는 것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병덕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권태현 같은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같은 취지입니다.

○민병덕 위원 앞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는 환수하지 말자는 거지요, 이자를?

○전문위원 권태현 지금 현재 중앙행정기관……

○민병덕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여쭙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권태현 예, 그렇습니다. 같은 취지입니다.

○민병덕 위원 알겠습니다.

○최승재 위원 저도……

○소위원장 윤한홍 예, 최승재 위원님.

○최승재 위원 현행법에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 받으면 원상회복 소요비용 보상금 포함해서 권익 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외에 구조금 신청이 불가한데 타법의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본인 외 타인 신청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위원님, 그건 뒤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최승재 위원 아, 뒤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한 가지만 여쭙어보겠습니다.

국공립학교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나 규모가 제법 되나 보지요? 혹시 지난해 통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 국장이……

○국민권익위원회심사보호국장 권석원 심사보호국장 권석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신고로 접수됐다거나 그런 사례는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법령해석상 이런 이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송석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이 조항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까?

○전문위원 권태현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항목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청이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 제재부가금 면제뿐만 아니라 감경 또한 가능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요지입니다.

행정청이 부정청구 정황을 포착하게 되면 사전 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수익자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의 사실발각 및 행정청의 인지 여부가 알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신고는 법문상 “자진하여 신고”로 볼 수밖에 없으나 진정한 의미의 자진신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재부가금의 감면으로 법문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

니다.

다만 행정청의 인지시점 등 자진신고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부위원장님, 정부 의견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청이 부정청구 정황을 포착하여 조사 등에 착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못한 과거 일부의 사례를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의 개정은 필연적이라 볼 수 있으며, 행정청의 인지시점은 조사, 감사 등의 절차 착수 시 공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지시점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수범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조금 중복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면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만 자세히 설명을 해 주면 우리 논의가 조금 신속히 이루어지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전문위원 권태현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이의신청 불복사유를 각호에 열거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이의신청 통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36조와 동일하게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이의신청의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현행법 규정 방식이 개정안 규정 방식보다 수범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서 이에 맞추어서 개정안의 법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에 전부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권태현 15페이지입니다.

구조금 신청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부정청구등에 대해 신고한 사람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부정청구등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과 구조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정안은 보상금과 구조금을 구별하고 구체적 피해, 비용을 법률에 명시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3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정부 측 의견도 모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권태현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준용 규정 추가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입니다.

개정안은 준용 규정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제61조의2, 제68조제5항·제6항, 제70조의2제1항·제3항을 추가함으로써 각각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 요지입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등은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고 나머지 이의신청 등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상금 상환 근거 마련과 관련된 제70조의2와 관련하여 70조의2 제2항도 보상금 등의 상

환 및 환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으로 특별히 준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준용 규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윤한홍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태현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허위·과다 청구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거나 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허위청구자 및 허위청구를 알면서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다청구자 및 과다청구를 알면서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부정수익자에 대한 환수 및 이자,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 외에 형사처벌 근거가 없어 부정수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이고 다른 입법례를 감안할 때 형량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입법례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법무부 의견은 관계 없는 겁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 의견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적정히 위원님들께서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권태현 마지막으로 부칙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70조의2와 관련해서 수정한 내용을 부칙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정부 측 의견.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이용우 의원안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국가재정법 및 조세범 처벌법을 추가, 이주환 의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추가, 이종배 의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 정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표 안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검토 요지입니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신고자 보호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

으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각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부안 등 19개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는 유사한 분야의 법률들이 이미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안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재난안전통신망법의 경우 해당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1월 30일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19개 법률의 소관 부처들은 다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조세범 처벌법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국세청의 담당 과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은 과세권 관련된, 제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시킬 경우 이와 함께 개정해야 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국세의 납부·징수와 관련,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조세범 처벌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시킬 필요성은 인정되나 소관 부처의 반대 의견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의견에는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우리가 국세청 의견을 좀 들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누가 왔습니까? 나와서 발언대에 서서 소개하고 의견을 좀 이야기해 보세요.

○국세청조사기획과장 박근재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박근재입니다.

기재부와 국세청이 함께 검토한 내용을 잠깐 간략히 핵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한 네 가지 측면입니다.

형법의 특수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형법의 특수법령입니다. 따라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 이익도 물론 중요한 사항이나 무고로 인한 피해 우려 등 사회적 파급 효과,

국민……

○강훈식 위원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잘 안 들려요. 설명을 해 주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윤한홍 천천히 한번 해 보세요.

○국세청조사기획과장 박근재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법의 특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형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 이익도 당연히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더불어서 무고로 인한 피해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될, 그래서 국민들의 편익도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체계상 상충되는 측면입니다. 과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공보법에서는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과 위반,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탈세 제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세무조사 실시를 하는지 여부 또는 내용, 결과 등에 대해서 제보자 본인에게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리침해 부분입니다.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권리침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신고 내용에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서 재조사를 법에 예외적으로 엄격한 사유에만 한정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위원회 등의 결정을 통해서 한 사안에 대해서 권익위가 그것을 신고자의 이의 신청만으로 다시 재조사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의문이 있다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복 조사에 대한 이슈입니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중복 조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보법은 이에 반해서 재조사 규정이 도입되어 있고 이는 법률 간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셔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재부와 저희 국세청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수고했습니다.

거기 잠깐 서 있으세요,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박성준 위원님.

○박성준 위원 하나 여쭙볼게요.

일단 국세청하고 기획재정부는 신중 검토고 곤란하다는 거잖아요?

○국세청조사기획과장 박근재 예.

○박성준 위원 그 내용 중에 보면 신고자 보호 이익과 무고로 인한 피해, 무고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야 신중 검토와 수용 곤란인데. 예를 들어서 사회 공적 기여에 대한 부분, 신고자 보호의무 이런 것도 있지만 무고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 법안을 반대하는 타당 근거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세청조사기획과장 박근재 예, 실무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탈세제보를 연간 약 2만여 건 받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2만 798건, 작년에 2만 1000건 등 받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가 신빙성이 부족해서 탈세제보를 모두 다 과세에 활용하지 못하고 누적 관리하는 비율이 약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80%요?

○국세청조사기획과장 박근재 예.

○박성준 위원 무고가 80%라는 뜻인가요?

○국세청조사기획과장 박근재 그러니까 신빙성이 부족하고 무고로……

○박성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빙성 부족한 것하고 무고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국세청조사기획과장 박근재 예.

○박성준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조세범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통 그렇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세청조사기획과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런데 그것과 무고로 규명된 것하고는 완전 별개 문제인데 그걸 묶어서 무고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세범과 관련된 법적인 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국세청조사기획과장 박근재 어떤 말씀인지는 충분히……

저희가 무고와 그리고 과세 활용성이 적은 제보에 대해서 구별할 실익은 세금 측면에서는 없기 때문에 일괄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라는 측면을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상 신빙성이 부족한 자료가 탈세제보 들어온 2만 건 중에서 약 80% 이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래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부위원장님, 지금 추가되는 법이 몇 개 법안이지요, 조세법 처벌법까지 포함하면?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20개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20개 법안이 들어왔을 경우에 공익신고가 어마어마하게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다른 법은 괜찮은데 방금 말씀하신 조세법 처벌법이 가장 많을 것 같고요.

공익신고가 2020년도는 한 5500건이고 2022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한 3000~5000건 사이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탈세가 들어온다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저희도 공익신고 들어온 사건들 중에 실제로 송부하거나 이첩해서 적발률을 보면 10%,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건은 굉장히 늘어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국세청에도 한번 물어볼게요.

탈세로 신고하는 게 1년에 한 2만 건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국세청조사기획과장 박근재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의심이 가는 경우만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은 국세청의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요?

○국세청조사기획과장 박근재 저희는 별도의 위원회를 거쳐서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회에서? 그러면 위원회에서 신빙성이 없으면 아예 검토를 안 하는 겁니까? 조사를 안 하는 겁니까?

○국세청조사기획과장 박근재 전산시스템에 다 누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대상자가 현시점에서는 조사 실익이 낮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할 수는 있습니다만 추후에 다른 과세자료, 국세청 내부·외부의 각종 과세정보와 결합돼 가지고 그 자료가 활용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지금 이렇게 현행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고는 계속 제기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세청조사기획과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신고된 행위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 발의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거니까 그런 제보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부적인 규정을 보완한다든가 아니면 행정력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의 법안 발의가 1건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안 발의한 의원님들 입장에서 ‘그래, 그 정도면 한 번 더 지켜보자’라고 양해할 정도의, 각종 제보 이런 것에 대한 과학적 처리에 대한 입장을 국세청 차원에서 한번 명백히 밝혀 주세요.

○국세청조사기획과장 박근재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이번에 여러 의원들께서 공보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주신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세기본법에 신고자 보호조치 등 일부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보다 좀 더 강화된 형태로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도 발주해서 내년도에 현재보다 좀 더 강화된 측면의 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한 부분도 함께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최승재 위원님.

○최승재 위원 세금 관련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보통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세금 관련해서 추정 과세도 하고 그러는데, 부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공익제보가 익명성이 있지요, 사실 공익제보라는 이름하에.

그런데 세금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실 어떨 때 보면 세무조사도 유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조세 관련된 부분들이 물론 투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가서 탈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공익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크고 작은 비리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엄청난 탈세가 벌어지는 일들도 많고 그걸로 인

해서 방지 효과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국민의 세금을 상당히 아낄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범죄행위도 일어난 부분들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세금 체계와 이런 체계를, 아직 시스템을 완벽하게 제대로 갖춰 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에 관련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이런 법률이 신고 체계로 들어가게 됐을 때 거꾸로 혼돈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부분들에 대한 방지 효과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공익제보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까도 사건·사고가 많아지면서 그것에 대한 정비를 먼저 이루자는, 국세청이랑 같이 그런 정비 효과를 먼저 갖추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세청에서 우려하는 것이 신고가 됐을 때 허위라든지 증거자료가 부족한 부분을 바로 조사하지 않고 특정 기간 유예해 가지고 다른 과세자료를 활용해서 특정 시점에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 쪽만 조사를 해서 일응 타당하다 하면 전부 송부, 이첩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전문성도 더 키워야 되고 조직도 늘려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건하고, 조세 사건은 약간 특수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사실 의원님들이 이 법을 냈을 때는 좀 필요성이 보이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지금은 탈세 신고나 이런 걸 국세청에 하면 신고한 사람이 보호가 됩니까?

○국세청조사기획과장 박근재 예, 저희도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라서 보호 조치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보호돼요?

○국세청조사기획과장 박근재 예.

○소위원장 윤한홍 그 사람들 신분이라든지 모든 게 보호가 됩니까?

○국세청조사기획과장 박근재 예,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래요? 이 공익신고법에 들어오면 신고한 사람 보호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보호되고 그다음에 조사를 권익위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는 거고?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지금 그 차이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그리고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 신고인에게 반드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렇게 되면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너무 많은,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료에 대한 비공개가 필요한 그런 부분 이런 걸 지금 걱정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나는 필요성도 있어 보여요.

○강훈식 위원 형법류들이 공익적 신고로 인정되는 것은 조심스러운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 조세법 관련해서는 저는 그런 말은 일리가 있을 수 있겠다. 형법류인데 이게 공익신고로 인정되면 범죄를 저질러도 공익신고로 열어 줄 수 있는 거냐 이런 쟁점과 논란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권익위한테 질문은, 그냥 이 사안만 놓고 보면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넣는 게 더 큰 문제와 혼란이 올 수 있어요. 동네에서 공장 지을 때마다 동네 주민들이 반대하고 환경단체에 이야기할 겁니다. 다 공익신고하면 이제 다 스톱되는 거예요, 다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법무부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조세 관련해서 우리가 전문성이 그만큼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약류는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쟁점이.

제 말씀은 기본적으로 권익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긍정 검토할 자세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고, 다만 법률적으로 보면 형법을 우리가 공익신고에 넣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과 신중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만 이해가 되는데, 또 하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게 사실은 답답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다른 것들은 다 공개돼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 세금에 대해서 국세청이 폐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내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 안 되는 부분이 존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것도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세청이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나름대로 불투명성이라고 할까요? 물론 투명하다고 하겠지만 그런 답답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될 거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면 오남용되고 많은 분들이 신고하셔서 실무적으로 부담스럽고 권익위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받아 주기가 좀 어렵고, 이런 논란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계속 국민들은 답답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세청은 이 법이 통과되는 것과 무관하게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의 제기를 어떻게 공개하고 문제 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라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대안 없이 오늘 여기 오서 가지고, 발제하신 내용을 제가 왜 천천히 말해 달라고 했냐 하면 뒷면에 다 적용돼요, 그런 논리로. 딱 형법에 대한 것 빼고는 다 적용되거든요. 그런 논리면 여기 아무것도 넣어 주면 안 돼요, 이 법 자체에서. 국세청만 빼는 게 아니라 다 안 해 줘야 되는데, 특히 공장은 지방에서 공장 지으려면 동네에서 내가 공익제보한다고 하면 다 브레이크 걸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고, 오히려 오늘 이 쟁점은 쟁점대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다 하더라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답답함, ‘내가 왜 더 많이 피해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한 궁극적 해결 방안을 한번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권익위로 안 가고 처리하는 방법을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무

죄추정의 원칙 이런 것 해 놔잖아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로예요. 세금만 무죄추정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다 무죄추정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은 안 된다 그 논리는 좀 궁색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법이 들어오면 권익위에서 1년에 한 2만 건, 3만 건 들어오는 걸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해 줘야 돼요, 너무 많으니까.

지금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2만 건 중에서 얼마를 조사한다고 했지요? 10%? 20%?

○국세청조사기획과장 박근재 10~20%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10~20%를 걸러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권익위에 그것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업무량이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세범 처벌법을 넣느냐 마느냐를 고민할 그것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오는 게 맞지 법 논리를 가지고 여기다가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 것 하면 그건 안 맞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무죄추정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세범만 무죄추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궁색한데, 솔직히 말해서 국세청에서 자기들이 이 업무하는데 다른 기관에서 관여하는 게 별로 마땅하지 않다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왔을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 옛날에 38세금기동팀을 만들어서 운영해 본 사람이에요, 서울시 세무과장 할 때. 해 보면 신고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국세청은 그런 것 안 했잖아요. 그냥 돈 다 처분하고 못 받는 걸로 간주 처분을 해 버리잖아요. 사실 필요하기는 한데 행정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러면 이걸 만약에 국세청이 반대하면 20개 법안 중에서 조세범 처벌법 이것만 빼고 지금 의결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그런 상황이지요?

○전문위원 권태현 예, 저번에 의결한 2개 포함해서……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강훈식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이걸 빼고 이번에 하더라도, 어쨌든 국세청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음번 국회에 반드시 또 올라와요.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하게 하고……

○강훈식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윤한홍 이걸 해 보고 다음번에 권익위에서 업무 역량이나 준비가 더 되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넣어 버리면 권익위 업무가 마비가 될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강훈식 위원 부대의견 넣어서, 안 되면 22대에 법안이 올라올 거예요. 안 올라올 수가 없어요.

○소위원장 윤한홍 강 위원님 만드시 낼 것 아니에요, 다음에.

○강훈식 위원 제가 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웃음소리)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 권태현 11페이지 부칙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13페이지 이것은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권태현 예, 13페이지는 조세범 처벌법이 들어가지 않으면 필요 없는 사항이고요.

11페이지, 부칙 관련된 수정 의견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돼서 이에 맞춰서 부칙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권익위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들……

그러면 아까 조세범 처벌법 빼고 수정해서 의결하면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권익위 괜찮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소위원장 윤한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만드시 달아 가지고.

그러면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권익위원회 법률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도 가서 전달하세요, 분명히.

○국세청조사기획과장 박근재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말씀 오늘 잘 들었고요.

○강훈식 위원 대안 만들어 오세요. 안 그러면 더 크게 돼요.

○소위원장 윤한홍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져온 논리가 궁색해요, 내가 볼 때.

○국세청조사기획과장 박근재 예, 알겠습니다. 권익위하고도 한번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와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육성권 사무처장이 참석했습니다.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의장에서 발언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1)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4)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58)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0)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43)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27)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16)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4)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5)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5)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4)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9)
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46)
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39)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62)
2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31)
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3)
2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3)
2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50)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4)
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24)
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6)
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19)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8)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7)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2)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6)
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04)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38)
35.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35)
3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2)
3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3)
3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43)
3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6)
40.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2)
4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8)
42.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487)
4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4)
44.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6)
4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7)
4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4)
47.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7)
48.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1)
49.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3)
5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8)
51.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5)
52.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6)

**53.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71)

**54.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72)

**5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33)

**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81)

**5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07272)

**5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07657)

**5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1616)

**6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2094)

**6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8324)

**6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5)

**6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5)

**6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1)

(11시03분)

○소위원장 윤한홍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64항  
까지 이상 5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전문위  
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 제목인 소위 자료입  
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점사업  
자와 마찬가지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 수용 시 일부 수정 의견입  
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행위  
로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거래행위를 포섭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어서 개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가맹지역본부는, 오른쪽 박스에 보면 교육업이  
나 세탁업 등 부가적인 서비스 창출이 필요한 분  
야에서 하고 있는데 예컨대 윤선생영어교실이나  
크린토피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  
계는 없지만 1만 2487개 브랜드 중에 약 5~10%  
정도가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맹지역본부의 이중적 지  
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 수용 시에, 왼쪽에 보시면 제11조  
는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가맹계약서 작성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맹지역본부에 직접  
적으로 해당되지 않아서 제외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시정조치나 시정권고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제13조의 계약갱신청구권  
10년 보장입니다. 현재 1년 단위에서 10년 계약  
갱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페이지에 보면 관련 협회 의견이 있는데, 예  
컨대 교촌의 경우에 1개의 가맹본부 외에 지사가  
26개가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1307개가 있습니다.  
그쪽 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가맹본부가 2022년 기  
준으로 8183개, 가맹본부에 여러 개 브랜드가 있  
기 때문에 1만 1844개가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가맹지역본부의 세 가지 계약  
형태가 있는데요.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 사  
이에 올릴 수도 있지만 가맹점사업자와의 관계에  
서 갇힐 수도 있다는 이중적 지위가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에 의제 조항으로 여러 가지 조항을 추가했습니  
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님  
정부 측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공정위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 입장은 수정 수용이 되겠습니다.

가맹지역본부를 가맹사업법을 통해 보호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11조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가맹지역본부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 위원 저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수정의견?

○민병덕 위원 예.

○소위원장 윤한홍 우리 법안을 내신 분이 수정의견에 동의하신다고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수정의견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법안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은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변경하여 우리 김종민 간사님의 요청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5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참조해 주시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훈 제목이 기업집단 및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법률에 규정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뒤에 있습니다.

‘기업집단 및 동일인관련자 범위를 법률에 규정 등’ 돼 있는데 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전문위원 최용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하단 박스를 보시면 개정안 내용이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동일인이 주주가 아닌 경우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동일인이 직접 영향력 미행사 시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거고, 네 번째는 감사 등 임원 독립경영 회사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1번하고 4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현행법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2개, 상호출자제한은 48개의 기업집단이 있습니다. 다양한 적용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업집단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는 입법으로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다양한 제외 기준을 설정하는 현행 시행령 제5조의 적용이 배제되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번, 동일인이 주주가 아닌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거나 3번, 동일인이 직접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경우 개정안에 따를 경우 기업집단 규제 범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만 기업 경제력 집중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7페이지, 4번입니다.

감사, 비영리법인 임원의 독립경영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인데 일괄적으로 기업집단 규제 내에 편입하는 것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외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쪽과 13쪽에 관련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2페이지는 왼쪽의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개정안은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에서 관계인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이 아닌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측에 보시면 지난 13년 동안 12건의 허위 제출 고발이 있었고 5건의 형벌이 있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23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형벌 중에 2번의 2번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제출 거부만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다른 형벌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공정위 입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행령 4조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몇 조요? 어느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첫 번째로 현행 시행령 4조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안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신중 검토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 현행대로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위원장 윤한홍 이유는 뭐지요? 이유까지 설명하면서 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이유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신중 검토는 전문위원 의견하고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그러면 이유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집단의 범위에 관해서는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법률에 규정할 경우에는 현행 법령이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이 출현할 때 융통성 있고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친족 범위 조정이라든가 사외이사 지배 회사의 계열회사 원칙적 계열 제외 등 최근의 제도개선은 모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추진이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신중 검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3번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인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안인데요.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동일인이 지분이 없거나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규제 필요성이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인은 지주회사나 순환출자구조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직접 지분이 없더라도 간접 지분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할 경우에는 규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큼니다.

예컨대 친족 또는 임원만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이들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

사도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부당 지원 등 경제력 집중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감사 및 비영리법인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추가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신중 검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의 경우에는 상무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임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감사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 임원의 경우에도 최근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 중 총수 일가 이사가 등재된 공익법인 비율이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은 아직까지도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새롭게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제도가 도입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에 배치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도 독립경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독립경영 신청을 통해서 임원 독립경영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정자료 제출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를 동일인 자연인에서 회사로 변경하는 안 그다음에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신중 검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자료에 대한 성실한 자료제출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연인 동일인에게 지정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업집단 지정과 계열 편입을 회피할 유인이 큰 상황에서 동일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친족 정보는 동일인이 제출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 회사 측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할 경우 지정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기업집단 시책의 출발점인데 이러한 정확한 자료제출 확보는 형벌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태료로 전환할 경우에는 기업집단 측에서 과태료 납부를 감수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들 의견……

강훈식 위원님.

○강훈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잠깐 해서, 아마 뒤에 참고자료도 그래서 공정위에서 붙여 온 것 같아요.

제가 국회에서 유일하게 벤처·스타트업 연구하는 단체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나 또 지원하는 문제나,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되게 앞장서서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고민하고 토론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아까 동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디테일하게, 방금 마지막에 처장님 말씀하셨던 게 어떤 거였지요,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아, 지정자료 관련해서 동일인 대신 회사를 제출 의무자로 변경하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훈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착각했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이 법률안이 근본적으로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한다는 겁니까, 이 개정법률안이?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시행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지금 시행령 4조에 있는 주요 내용을 그대로 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법률로 올리고자 하는데 대해서 공정위는 전반적으로 지금 반대한다는 입장인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신중 검토 의견인데요, 다른 것은 신중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보통 이게 문제가 된 게 공익법인의…… 그러니까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그 경험을 가지고 공익법인에서 뭔가 기여를 하거나 활동을 할 경우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 기업집단에 포함이 되잖아요.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뭐 없을까요? 그것은 나는 부당한 것 같은데……

대개 비영리법인을 오랫동안 해 온 사람의 노하우가 다 있어요, 비영리법인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또 공적 가치.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공익법인에다 뭘 임명해 놓으면 이 사람이 여기에 임명되는 순간 이 사람이 원래 운영하고 있던 비영리법인이 이 대기업의 계열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뭐 없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그러니까 현재도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전문성을 가진 분이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되면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정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법에 독립경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열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서 독립경영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동일인 관련자에서 배제가 되는……

○김종민 위원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반영이 잘 안 되는 다른 요인이 있나요? 그 요구가 계속 있는 건데, 지금? 이 4항에 대한 개정 요구는 그것 때문에 제안이 된 거거든요. 현장에서, 그렇게 해서 기업집단에서 뺄 수가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되지요? 그것 안 되는 이유가 뭐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정책관 선종규 기업협력정책관입니다.

그 자체 문제가 해결 안 된다기보다도 그분들

은 애시당초 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계열사에 넣지 말아 달라는 거고요. 저희는 공익법인 임원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계열사로 일단 지정을 하되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해서 신청하면 빠질 수 있는 제도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넣지 말아 달라는 게 요구입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빼 줄 수 있는 제도는 문제가 없는데 그 전에 사전에 아예 집어 넣지 말자 이런 애건가요?

○**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정책관 선중규**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것은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소위원장 윤한홍** 다른 위원님들……

○**강훈식 위원** 보류하시고 더 논의하시지요.

○**소위원장 윤한홍** 제가 보니까 법을 내신 분은 아마 기업들 의견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공정위가 시행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 해서 법으로 넣으면 공정위가 과도하게 하지 않고 예측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법을 낸 것 같은데……

김종민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공정위가 뭔가 대책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동일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조만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집단 측에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에 규정을 하게 되면 계속 친족 범위 조정이라든가 이런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소위원장 윤한홍** 그 말은 맞는데,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게 규제를 풀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정위 권한을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활용하니까 그래서 이 법안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민병덕 위원** 예.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규제를 하면 이 법안이 나중에 통과돼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못 하게끔 해야 되는 법이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을 참고하셔서 대책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알겠습니

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용훈** 심사자료는 제목이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기록 송부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소위원장 윤한홍**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기록 송부 요구권을 제출 명령권으로 강화 등’ 이렇게 된 자료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무혐의·종결 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현행법에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는데 처분이 아닌 무혐의 또는 종결처리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수단이 재신고 외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현행 재신고 심사 제도를 통해서 개정안의 취지가 일정 부분 달성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무혐의 결정 2059건 중에 재신고 접수된 건은 181건이었습니다.

개정안은 무혐의 결정 등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재심사 제도는 법률에 규정 없이 공정위 고시에 따른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만 그 입법 방식에 있어서 현행법 제80조를 개정해서 제3항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법원의 공정위에 대해 기록 송부 요구권을 제출 명령권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록 송부 요구가 있는데 요구·명령 강제성이 없어서 지난 5년간 회신율이 43%에 불과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자료제출 명령은 강제성이 있어서 100% 회신율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기록 송부 요구를 기록 또는 자료 제출 명령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만 입법취지나 법체계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는 공정위에서 금년 12월 29일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조사 또는 심사보고서 등이 있는데 이는 현재 공정위가 생산되지 않는 문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13쪽은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공정위 사무처장님,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공정위 측 입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혐의·종결 처리 결정에 대한 신고인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무혐의 결정 등을 받았을 때 신고인은 재신고할 수가 있고요 재신고가 이루어지면, 재신고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재신고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사건 조사 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절차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신고 심사 절차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기록 송부 요구권을 제출 명령권으로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이 점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의 적용 대상이나 자료의 범위 등을 보다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사건기록에는 신고인 또는 피심인 측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사자 동의 없이 제출할 경우에는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요. 공정위는 임의조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할

때 공정위 조사만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료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의 없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게 될 경우에는 공정위 조사가 향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법원 소송 과정에서 공정위의 자료 협조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중에 공정위가 취득하고 있는 자료를 소송 당사자에게 특히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최승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승재 위원 최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쪽 봤는데요, 검토의견도 들었는데요. 무혐의·종결 처리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는 아마 억울해서, 사실 모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도 무혐의가 되고 종결 처리가 된 이유가 공정위에서 보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사자는 아무래도 신속하게 다시 하기를 원하겠지요.

그런데 재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재심 결정이 나는 과정이 아무래도 법률적 규정이 없고 공정위 고시 사항으로 되고 공정위 훈령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도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맞습니다.

○최승재 위원 그리고 행정심사 여기 보니까 재신고, 민간심사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법률로서 규정을 좀 해서 하겠다라는 법안인데 언뜻 보면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절차상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어쨌든 간에 결론을 좀 빨리 내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안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는데……

사실은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는 이런 재신고 위원회를 거쳐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설사 그 사람이 소명이 되더라도 이미 그 사람의 문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난 다음에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이런 정도는 그래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고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재신고를 했을 때 그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재신고심사위원회도 상당히 효율적인 제도고 이분들이, 재신고심사위원회가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신고 사안이 과연 또 한 번의 추가적인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운용상의 문제를 앞으로 더 개선한다면 굳이 이의신청 절차를 추가적으로 신설할 필요성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승재 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절차나 시간. 그리고 행정규칙하고 법률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법률로 수정되는 거랑.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안병훈** 심판관리관입니다.

기간은 저희들이 한 달 이내에 결정이 되고요, 인용률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용률이 상당히 높고요.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 가는 측면이 있는데 신고인과 피심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법률로 상향하게 되면 저희들의 1심 역할을 하는 의결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건데 지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는 구조는 당사자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신고인이나 아니면 법원으로 말하면 고발인이 만약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다 보면 법원에서는 피고 또는 우리 쪽으로는 피심인의 지위가 좀 불안하게 되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법률로 상향하더라도 저희들이 신고인의 지위, 타 입법과의 비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당장 이것을 지금 이렇게 판단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박성준 위원님.

○**박성준 위원** 저도 하나 좀 질의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불복해서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맞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런데 다른 행정부, 예를 들면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청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준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절차와 과정이요? 이게 구체 절차라는 거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보통 구체절차는 제재를 받는 피규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도 주로 사업자인데요, 사업자가 공정위 처벌에 대해서 수용을 못할 때는 불복절차, 이의신청 그다음에 법원에 소송 제기 이런 건 다 돼 있고요. 지금 문제되는 것은 보통 피해자가 되겠지요.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에 대해서 위법행위를 한 거래 상대방을 신고를 했는데 예컨대 공정위의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고 이랬을 때는 신고인 입장에서는 그걸 수용하기 어려우니까 위원회에 판단을 한번 다시 해 달라,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달라라는 절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런데 그 2059건 중에 181건이 접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박성준 위원** 접수 자체도 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8.8% 되고 그중에서도 재신고 접수 대비해서 처리된 것이, 재심사 착수된 것이 한 18.2%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연인 거지요? 이게 연.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연도별로 해 가지고 3년……

○**박성준 위원** 이게 보니까 3년간이네요,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3년 평균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박성준 위원** 구체절차를 좀 더 강화하자라는 게 이 법의 취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그렇습니다.

○**박성준 위원** 예를 들면 피해가 됐다고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재심을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는 법적 절차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한 취지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

공정위에서는 왜 신중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게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아까 그런 절차가, 현재도 저희가 재신고심사위원회를 통한 절차가 그런 취지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신고인 이의신청 절차를 두게 되면 같은 취지의 제도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성준 위원** 여기 지금 김종민 의원부터 해서 법안을 낸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불복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재신고심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 법안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은 좀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쪽 흐름을 봐서는.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여기서 박성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혐의·종결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불복절차를 하나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정위는 재신고심사, 재심사?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이 절차를 만들고 재심사위원회를 이의신청 거기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의신청하게 되면 기존에 재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절차를 신설하면서 재심사위원회를 거기다 넣어 버리면 그걸 포함시켜서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지, 기존에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중복된다 이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양정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정숙 위원** 재심사 제도는 행정규칙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취지가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무혐의 결정하는 것 자체가 공정위의 공권력 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돼요. 우리 검찰에서도 무혐의 되면 항고하고 재항고할 수 있는데 지금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한 이의신청 제도가 없다는 게, 이걸 현재까지 입법의 미비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재심사 제도 자체는 그것은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권리는 아니에요. 그러

니까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그게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입법의 공백기가 너무 길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원장 윤한홍**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차라리 이 종결·무혐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법에 만들고 중복이 된다면 규칙에 따라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여기 이 위원회로 대체를 해주는 게 맞지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필요성은 인정하는 거지요, 공정위가? 단지 중복될까봐 그러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안병훈** 심판관리관입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신고인의 지위를 어디까지 보장해 주냐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김종민 의원님 안에 의하면 우리가 의결을 다 한 후에 그 의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만드는 건데 이런 절차는 사실은 저희들이 1심의 권한이 있다고 하면 1심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라서…… 1심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저희 법제나 아니면 우리나라 통틀어서 고발인이나 신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무혐의나 이래서 조사를 안 하게 됐을 때 재신고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신고인의 지위는, 권한은 저희들이 많이 보호를 하고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보호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법제화해서 의결에 대해서 신고인이 이의를 하게 되는 제도를 만든다면 어떤 것들이 우려가 되냐 하면 신고인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선의의 피해도 있지만 악의의 신고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남용해서 우리가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의를 해서 피심인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그래서 저희들은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자는 측면에서는 동의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려면 피심인의 지위와 신고인의 지위에 대한 면밀한 균형 있는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논리로 하면 지금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재항고 이런 법률적인 구제절차가, 지금 그 논리로 따지면 다 혼란스러운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안병훈** 아닙니다. 그런 절차가 지금 재신고 사건하고 동일한 절차고 저희들이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판단했는데 그 1심 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고발인이나 이런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동일한 제도를 갖고 있는데 그걸 법률로 올리는 걸 왜 부담스러워 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기존에 하고 있다면서요.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안병훈** 예, 법률로 올리는 것이 저희들이 좀 부담스러운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제도를 법률로 올렸을 때 그러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것들을 세밀하게 디자인해서 문구를 만들어 주거나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가 안 됐고, 현재 이 재신고 사건이 위원님들께서는 좀 미흡하다고 보시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인용률이 20%가 된다는 건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이 재신고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없거든요. 잘 운영되고 있는 상태라서……

○**소위원장 윤한홍** 잘 되고 있으니까 법률로 올려서 이의신청 제도로 발전적으로 하자는 거지. 여러분 말에 잘 되고 있으니까 그리하자는 거지.

○**김종민 위원** 그걸 법률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리 복잡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잠깐만 윤영덕 위원님 말씀 듣고 합시다.

윤영덕 위원님.

○**윤영덕 위원** 저도 공정위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의신청하고 재신고하고 다릅니까?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안병훈** 예, 다릅니다.

○**윤영덕 위원** 어떻게 달라요?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안병훈** 이의신청은 처분이, 우리 의결이 다 나와서, 그러니까 법원으로 말하면 1심 판결이 나서 그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거고요. 물론 의미적으로 보면 비슷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그걸 이의신청이라고 말하고요. 그 전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검찰로 보면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는 거나 아니면 불기소 처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 고발인이 이의가 있는 것은 그 제도가 우리 재신고심의위원회고,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갖고 있

고 그런 것들이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윤영덕 위원** 재신고하는 이유가 결국 심의 결과에 불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신고인 측에서……

○**윤영덕 위원** 그런데 이의신청하고 어떻게 달라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안병훈** 이의신청은 1단계고요. 재신고는 조사, 그러니까 검찰로 말하면 불기소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의신청은 제재 처분을 받은 피심인이 제기하는 게 이의신청이고요. 재신고는 신고한 측에서 공정위가 무혐의나 이런 걸 하니까 무혐의 결정하면 무혐의는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이의신청과 재신고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냐는 걸 여쭙보는 거예요. 가해자라고 추정되는 피심인한테는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해 주고 피해자인 신고인에게는 이의신청 아닌 재신고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민병덕 위원** 두 개가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냐.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그러니까 재신고심사위원회……

○**민병덕 위원** 이의신청으로 가면 누가 하고 재신고를 하면 누가 하고 효과가 달라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효과가 같으면 용어를 다르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입장이 틀리니까 다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다른 경우가 뭐냐고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그러니까 제재를 받은 피심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은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복을 하는 거고요. 신고인 입장에서는 공정위 조사나 판단이 부당하다고 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윤영덕 위원** 그것도 아니잖아요. 개정안에 보면 이게 신고인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자는 거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윤영덕 위원** 그런데 이게 피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고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이런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재신고는 지금 어쨌든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신고인이 다시 좀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법률상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그렇습니다.

○**윤영덕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절차가 있다면 법률로 상향했을 경우에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러면 법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의신청하고 재신고…… 재신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신고를 한 사람이 다시 판단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병덕 위원** 추가해서, 피심인이 자기가 제재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 걸 수 있지요,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맞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런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신고인이 신고를 했다가 혐의 없음 종결이 나면 재신고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재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소송할 수 있습니까, 가해자처럼?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처분의 당사자가, 그러니까 불복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효과의 차이를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안병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김종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제도를 이쪽 검찰 현제도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재신고 사건 처리는 검찰로 말하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이의했을 때 항고·재항고가 저희 재신고 사건 처리고요. 김종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거는 1심 법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고발인이 그 판결에 대해서 이의하는 절차를 만들자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재 법제에 없는 제도라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신고인에 대한 지위를, 권한을 보호하자라는 측면에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법제라든지……

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피심인이 원심

을 받았는데 그러면 신고인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의결을 받게 되는 그런 지위의 불안정 그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소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그러면 당신네들이 논리를 잘못 써 온 거야, 그렇다면. 김종민 의원안이 1심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지금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안병훈** 예.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여기 당신네들 쓴 논리가 틀린 거지. 재신고 재심사 절차가 있으니까 필요 없다고 이렇게 지금 답을 써 왔잖아.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안병훈** 그런데 이제 저희……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그게 답이 아니라, 틀린 거지.

○**김종민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건 검찰·법원으로 사법 절차가 분리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여기 공정위는 이걸 같이 한꺼번에 하고 있으니까 그걸 통합시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안병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균형 있게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왜냐하면 피심인의 지위도 인정해……

○**소위원장 윤한홍** 이제 그만 이야기하시고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반대하는 논리를 잘못 가져온 거야.

○**김종민 위원** 공권력 행사에 대한 이의신청이니까……

○**소위원장 윤한홍** 재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필요 없다고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답변했잖아.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당장 생각이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게 이의신청 제도 법으로 만들면 그걸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재심사위원회가 거기 당연히 흡수되면 똑같은 효과고 법으로 뒀으니까 더 많이 보호가 되는 건데 지금 다른 소리 하잖아요. 이거는 1심 처리된 걸 가지고 하게 되니까 안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을 가져왔어야지.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안병훈** 제가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민병덕 위원** 그런데 검찰하고 다른 게 김종민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는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하고, 판단은 법원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수사하고 기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공정거

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안병훈** 예.

○**민병덕 위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판단하자라고 하는 게 재심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윤한홍 위원님 얘기처럼 그것을 법으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안병훈** 그런 제도가 지금 재심고 사건이 있기 때문에……

○**민병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하고 비교하면서 이런 규정이 없다, 이런 제도가 없다라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검사는 수사하고 기소권만 가지고 있지 판단권은 안 가지고 있잖아요. 판단권이 다른 곳에 있고 기소는 검사라는 국민의 대변자가 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건데 여기서는 수사·기소권과 판단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로 재심사 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재심사 제도가 이의신청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진다면 윤한홍 위원님처럼 그걸 법률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윤한홍** 그다음에 다음 항목 또 이야기해 보세요.

○**김종민 위원** 2번 항목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소위원장 윤한홍** 자료 송부권, 제출 명령권 이거……

○**김종민 위원** 예, 제출 명령권.

○**소위원장 윤한홍** 예, 이야기하십시오.

○**김종민 위원** 이것도 되게 필요한 조항인데 이 용역을 언제까지 한다고요?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안병훈** 금년 안에 마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 취지는, 피해자 보호 그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하고 다만 이제 여기에 비밀유지 의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영업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가서…… 이것도 세밀한 설계가 필요한데 지금 용역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자료들이 다 법원에 갔을 때 영업비밀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아주 세밀하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여기서 그냥 영업비밀만 삭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라서 그런 것들이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영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김종민 위원** 그거를 좀 빨리빨리 해야지 이제 21대 국회 다 끝나 가는데 용역 기다렸다가 입법을 해야 되니까 힘든 거야, 이게.

○**소위원장 윤한홍** 송석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석준 위원**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의 발의의 취지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대부분이 공정위에 제보하는 분들, 제소하는 분들이 보통 억울한 분들이잖아요. 약자 보호를 위해서 철저히 우리가 보다 더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든 이런 어떤 불공정 행위, 경제행위에 있어서 불공정을 느끼는 분들이 모든 것을, 이런 2개 조항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 결국은 사법화잖아요, 사법화. 모든 것을 사법부에서 논의하게 되면 사실 당사자들도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사법부가 사실 전문성은 부족하잖아요. 무엇보다도 현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게 공정위 여러분들 아닙니까? 사법부는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다루다가 마지막 수단으로 법적 절차, 여러 가지 엄밀하게 보기 위해서 사법부로 넘기는 거지 실질적으로 경제행위의 성격, 복잡한 이해관계 이런 것을 제대로 아는 건 공정위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공정위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공정위 전문가들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무혐의, 이런 무수히 쏟아지는 억울함을 우리는 무조건 제보를 하고 그것이 사법화되고 그러면 변호사분들은 일거리가 많아져서 좋겠지만 또 사법부는 그걸 전문가들이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는 장치 없이 바로 사법화로, 모든 행위 다툼이 다 사법화로 가면 당사자들도 소송 비용 많이 들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정위가 사실은 업무 전문성이 있는 정부 부처로서 사법부의 어떤 복잡한 업무를 미리 전문적인 관점에서 걸러 주고 걸러 주고 해서 마지막 사안들만 사법부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맞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송석준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는 좀 더 공정위가 김종민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한 그런 취지를 고려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무혐의 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지금보다는 좀 더 성의 있는 그런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당사자가 납득이 가게끔 해야지요. 납득이 안 가는 무혐의가 많다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전문성과 여러 가지 자료 또 실태에 대해서 경제행위, 구체적인 현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공정위가 좀 더 업무 매뉴얼도 세부적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사법화하면 정말 사법부도 감당이 안 되고 당사자 비용은 너무 듭니다, 사회적 비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각성을 좀 하시고 업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전문성 있게 매뉴얼도 강화하고 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공정위가 무혐의 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우리 공감한다’, 어차피 법원에 가 봤자 또 다투고 이렇게 시간 끌고 서로 힘들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이거는 좀 더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정 내리기보다는.

○소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신설 또 기록에 대한 제출명령권 이 부분 아마 취지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지금 거의 반대가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조금 더, 용역도 있고 한다고 하니까 빨리 그 세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절차 신설도 지금 공정위에서 답변하는 거 보면 굉장히 궁색하고 논리가 왔다 갔다 해요. 다른 위원회가 있으니까 필요 없다 했다가 또 그게 잘 되고 있으면 그건 법으로 넘기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 회의 때는 될 수 있도록, 용역도 이달 중에 끝난다면서요?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안병훈 예.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다음번 회의 때 다시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를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용역을요, 지금 용역 날짜는 조금 조정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용역이 마무리된 상태니까 빨리 판단해서 다음 회의 때 그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비식별 방법을 한번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래서 의사일정 제56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하기 전에 제일 먼저 논의를 했던 의사일정 제6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민병덕 의원님 법률안입

니다—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찬도 있고 하니까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우리 간사님하고 의논해서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6항부터 34항까지 이상 9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참조해 주시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번호를 붙여 놔습니다. 공정위 26~34 번호 붙여 놔습니다. 그것 보시고.

○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소위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개정안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주제는 총 4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기술자료 취득 등 행위의 효력 부인은 신중검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도 신중검토,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는 5배, 그다음에 손해액 산정·추정 규정은 김희곤 의원님 안 등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1번 주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하단입니다.

개정안은 기술자료 취득 등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5항에 기술자료 취득과 관련한 행위의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에 박스가 있는데요. 공정위 전속고발제도 관련해서 기술유용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은 폐지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할 다른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는 기술유용행위 관련 주요 적발 사례와 공정위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기술유용 관련 전속고발 현황자료가 7건 나와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3번 주제입니다. 박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지금 현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위탁취소, 보복조치 등 외 기술유용행위 등을 포함해서 현재는 3배로 하고 있고 실제 소송에서는 1배 또는 2배에서 판결이 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5배 또는 10배로 하고 있는데 저희 검토의견은 5배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법원에서 최대 2배 정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17페이지 다른 입법례를 보시면 대체로 5배로 하고 있고 맨 하단에 보시면 금년 11월 23일 날 산자위에서도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해서 5배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또는 추정 규정 신설인데요. 박스를 보시면 피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C 또는 B-C, A-B가 있는데요, 이 범위가 넓어질수록 피해 사업자의 권익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로열티까지 보상을 해 주는 이성만·송석준 의원님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은 대체로 그냥 추상적으로 러프하게 보는 내용인데요.

개정안들은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받은 제삼자가 얻은 이익까지 포함하는 내용인데 제삼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기술자료 사용에 따른 손해액 산정입니다. 산정은 좀 더 구체적이고 논거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개정안들은 통상 또는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

는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하는 경우가 좀 더 타당하다고 보았고, 35페이지에 보면 관련 특허법도 이렇게 개정이 됐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손해액 증명 곤란 시 인정 방법 및 손해액 산정 업무 위탁인데요.

윤영석·김종민·송석준 의원안은 기술평가기관에 손해액 산정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고 김희곤·송석준 의원님 안은 변론전체의 취지 등을 고려한 손해액 인정 가능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두 번째, 증거조사에 기초한 상당한 손해액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40쪽에 보시면 기술평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법원의 자유심증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44쪽하고 45쪽은 기술평가기관 34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공정위 의견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공정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삼자……

○소위원장 윤한홍 페이지를 설명하면서 하세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자료 취득 등 효력 부인 사안에 관해서는 공정위의 의견은 신중검토입니다.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제삼자로부터 기술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발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법적 안정성 측면 그다음에 제삼의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피해 우려를 고려할 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대안은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삼자가 얻은 이익을 피해 기업의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배상토록 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4번 항목에서의 손해액 추정 기준하고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잠깐만, 이 부분 논의를 하고 가는 게 안 나아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김종민 위원 그러면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반영해야 됩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탈취해서 제3사업자한테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삼의 수급사업자가 위탁을 받아서 수익을 올릴 텐데 이 수익을 기술을 빼앗긴 피해 기업의 손해액으로 추정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에서 배상받도록 하는 대안이, 그러니까 거래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보다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최용훈**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자는 게 공정위 의견인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맞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액 산정 기준 중에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것은 그 조항이 따로 있는 거고, 그러면 1번 효력 부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네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김종민 위원** 이건 대안이 아니지. 그건 대안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건데 그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나?

지금 공정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사에서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정도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근거로 법적 안정성을 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김종민 위원** 그런데 이게 일종의 범법행위 아니에요? 제삼자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범법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일종의, 다른 걸로 따지면 이게 장물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도둑질 한 거니까? 이 장물을, 장물 거래는 그냥 법적 안정성을 인정한다? 이게 그럴 필요가 있나요? 장물 거래는 원인 무효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장물 거래는 무효인데요. 무효가 되면…… 제삼자와 거래한 또 다른 제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사업자와 제3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관계가 무효가 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가 연속적으로 다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적 거래 관계가 상당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대개 일반적으로 원사업자가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게 이걸 피해 가기 위해서거든요, 기술탈취를 피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은 그것을 가림막 같은 형태로 아는 사람하고 짜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무효화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애기대로 거래가 이어지고 이어지고 하는 것의 복잡성까지 들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해 놓고 그런 거래가 이어져서 사실상 시장 전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가능성, 이것을 대비하는 다른 보완책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무효인 거래 관계를 기반으로 중층적으로 이루어진 거래 관계가 이후에 전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3의 수급사업자가 얻은 이익을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환수하는 게 거래 관계의 안정성에는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민 위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법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무효화시키면 제삼자가 내부자 거래인 경우에는 다 차단되는 거고요. 만약에 외부인 경우에 기술유용인지 모르고 거래를 한 제삼자 같은 경우는 기술유용 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자기 책임이니까. 그런데 만약 이런 무효화가 없다면 자기는 일절 책임 안 져도 되니까 기술유용 가능성이 있어도 계속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익의 측면이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역지력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제3수급사업자까지는 타인의 기술인 것을 알고서 수탁계약을 위탁받을 수 있는데 제삼자와 거래한 그 이후 단계의 사람들은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내막, 사정을 모르고 거래했는데 계속 연쇄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거래의 법적 안정성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김종민 위원** 이 법 관련 실효적인 측면에서 볼 때 원사업자가 제삼자를 동원해서 이런 기술유용 위장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삼자하고 짜고 하는 거예요, 대리인을 내세워서. 그렇기 때문에 제삼자까지는 거래 무효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그런데 제삼자에서 거래 관계가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요 그

이후에 거래 관계가 계속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이게 무효가 되고 유효가 되고 자꾸 바뀌니까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대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용어를 세밀하게 구체화 시켜서 세밀하게 좁혀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양 위원님.

○양정숙 위원 법적 안정성, 거래의 안정성 때문에 법체계상 항상 조문이 무효로 하고 단서조항을 넣잖아요. ‘기술취득행위가 불법이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무효로 가지 않는다 그렇게 단서조항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술유통·기술취득 행위가 불법인 걸 알았을 경우, 몰랐을 경우 그렇게 단서조항을 넣어서 조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병덕 위원 ‘선의의 제삼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거래 안정을 위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정책관 선중규 기업협력정책관입니다.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보통 원사업자가 기술을 탈취해서 그것을 자기가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고 또 자기 밑에 있는 수급사업자한테 기술을 쥐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만들어서 납품하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삼자가 생기는 건데요. 갑을관계가 워낙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받는 제삼의 수급사업자도 기술을 주는데 내가 ‘못 받겠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받아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효력을 부인해 버리면 그 제삼의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관계에 있었던 돈도 다 무효가 되니까 ‘너에게 돈 못 주겠다’ 해 버리고 또 그 수급사업자는 그 밑의 하도급자한테…… 계속 거래가 연결되어 있는데 원사업자가 ‘이것 어차피 법에 무효니까 너한테 대금 못 주겠다’ 해 버리면 그 수급사업자도 사실은, 물론 알고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주는데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갑을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수급사업자가 보호가 안 되고 선의의……

○양정숙 위원 보호가 되는 거지요. 선의의 제삼자는 무효가 안 된다니까요. 선의의 제삼자는 그 무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무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의 제삼자

는 보호하면서 거래의 안정성을……

○민병덕 위원 갑을관계에서 약이라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정책관 선중규 예, 어려워서 그냥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윤한홍 하나만 물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대안으로 공정위 의견은 무효화되는 대신에 제삼자 이익을 피해 기업의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배상받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제삼자 이익을 정확하게 여러 분들이 산정할 수 있어요? 제삼자의 이익을 기술 탈취 당한 피해 기업한테 손해배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정책관 선중규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제삼자의 이익을 정확하게 딱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대안으로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민병덕 위원 그것은 다른 것보다는 쉽겠네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을이 기술을 탈취 당했고 기술을 탈취한 갑이 을 ‘한테 하청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을’가 얻은 이익을 피해액으로,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훨씬 쉬워지지요. 그렇지요? 그 말씀이지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꽤 설득력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정책관 선중규 예, 뒤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해액 추정 기준에 보면 제삼자의 이익까지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뒤에 법이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는 그것을 같이 봐 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은 일단은……

송석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여기에 공정위 의견뿐만 아니라 법제처 의견도 신중하자는 거잖아요? 저도 행정부에서 많은 법을 다뤄봤지만 법 규정은 입법 기술적으로 가능한 내용이 들어가야지 그 취지가 좋다고 해서 법으로 문구를 막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호한, ‘취득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이렇게 모호한

규정이 어디 있어요? 김종민 위원님의 취지는 우리가 잘 살려야 되겠지만 법 규정은 명확해야 되고 또 누구나 다 해석에 이론의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호한 규정을 넣어 놓고 모든 행위가 무효다 그대 놓으면 그것 사법부도 헷갈릴 것이고 별의별 다양한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더구나 경제 현실의 행위들과 관련된 것들인데 다양한 변종 행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입법부에서 이렇게 모호한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법률 해석을 놓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법 문구는 명쾌하게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특히 의원입법들 경우에 굉장히 힘이 있기 때문에 만들긴 하지만 적용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법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제처의 판단 같은 것을 우리가 잘 신경 써서 반영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에 몰입하다 보면 결국은 법률적 관계를 굉장히 모호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취지를 다듬어서 추후에 좀 더 명확한 문구를 연구해서 반영하는 식으로 해서……

김종민 위원님, 다음에 취지를 반영해서 다시 한번 좋은 문구를……

○**김종민 위원** 이 문구는 김희곤 위원님이 만든 문구야.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소위원장 윤한홍**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서 논의하시지요. 이 항목을 가지고 계속하면 다음 진도가 안 나갑니다.

8페이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안 제32조 그 부분.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7페이지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공정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8페이지입니다. 우리 자료는 8페이지예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8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님 의견과 같이 공정위도 이것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존치·폐지 논의와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신중 검토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

면……

○**박성준 위원**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윤한홍** 이 부분은 공정위 의견하고 전문위원 의견이 동일합니다.

그다음 12페이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다음 12페이지, 세 번째 사안에 관해서 공정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입니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그다음에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액 현실화의 관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배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요. 제도 도입 이후에도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점, 그다음에 현재 3배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한 절반 정도만 배상액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현재 특허법이나 상생협력법에서도 5배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공정위도 5배 정도로 배상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이 부분 손해배상책임 강화는 김종민·김희곤 의원안에 동의한다, 그 대신에 배상을 5배까지 그런 뜻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배상액은 5배 정도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추정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네 번째 사안에 관해서 공정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기술탈취를 당한 피해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손해액 산정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전문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그다음에 상생법에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법안이 있지만 그중에 저희 공정위는 김희곤 의원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손해액 산정 방식에 관해서는 생산 가능 규모뿐만 아니라

그 생산 가능 규모 초과분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에 실시료까지 포함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상품의 범위는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대가의 수준은 통상의 대가보다는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하는 안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손해액 추정 기준은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제삼자까지 얻은 이익을 피해기업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한 상당한 손해액을 법원이 인정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하도급법에 공정거래법 115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있지만 기술유통 분야에 특정해서 이런 규정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액 산정 업무를 기술평가기관에 위탁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위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감정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손해액 산정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법원의 자유심증주의와 배치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특허법, 상생법 등 손해액 산정 기준에도 이런 위탁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그러면 이 부분도 큰 이견 없이……

○김종민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소위원장 윤한홍 아니, 지금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원사업 기술유통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추정할 거냐라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4번의 가번이지요. 가번은……

○전문위원 최용훈 김희곤 의원님안을 전체적으로 다……

○김종민 위원 오케이, 그것은 됐고.

○소위원장 윤한홍 그다음에 나,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30페이지.

○김종민 위원 페이지 수 좀 불러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걸 삼자까지 포함하는 거고……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삼자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개정

하고 있으니까……

○김종민 위원 이걸 아까 내용적으로는 반영한다고 그랬으니까……

○소위원장 윤한홍 이것도 동의한다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맞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

○소위원장 윤한홍 기술자료 사용에 따른 대가로 손해액 산정.

○김종민 위원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오케이, 좋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자, 그러면 됐습니까?

라가 또 있네, 38페이지. 손해액 증명 곤란할 때 인정 방법 및 손해액 산정 업무 위탁 이것도 김희곤 의원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일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게 자유심증 원리에 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위원장 윤한홍 아니, 김희곤 의원안은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 증거조사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따라서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산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김종민 위원 아니, 이게 전문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높는데 기술평가기관에 위탁하는 게 법원의 자유심증에 반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나?

○민병덕 위원 아니, 그것을 참고만 할 텐데.

○김종민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도 판사가 다 해야 돼?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민사소송법상 감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 정도만 해도 되지, 너무 많이 가도 그렇고. 그래도 많이 나아가는 법입니다, 사실은.

다 됐습니까? 또 이야기하실 게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이 법은 앞에 1번·2번은 공정위가 동의를 안 하니까 현행대로 두고 3번·4번 부분만 공정위가 동의하고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는 부분대로 의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병덕 위원 1번을 조금……

○최승재 위원 1번·2번은 어떻게……

○소위원장 윤한홍 2번은 공정위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전속고발제는 이거 그대로 폐지를 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공정위가?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저희 신중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공정위가 반대를 하니까 1번·2번 두고 나머지만 일단 우리 위원회가 의논한 대로 의결하지요. 일단 그 정도만 해도 나아가는 것 아니에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민병덕 위원 잠깐, 의견을 조금 내보려고요. 1번·2번에 대해서 의견을 아까 못 내서……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부대의견은 답시다. 의견 주세요.

○민병덕 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현실이 을이라는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갑이 이것을 유용해 가지고 을을 배제시키고 을'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민병덕 위원 그런데 을'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체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대체로 알고 있는 같은 업종에 있는 을'가 이 기술을 유용하는 것의 공범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 법안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취지는 동의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

○민병덕 위원 그 법안 그것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이걸 막아 줘야지 기술유용에 따른 동종업종에서의 다른 사람이 이걸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의 계약행위까지 무효로 한다면 오히려 을'한테 손해가 가는 것 아니냐 이거잖아요. 이것은 부당이득이라든지 사무관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을'가 민사적으로는 받을 수 있잖아요. 이 계약이 무효라고 해 가지고 물품을 만들어서 납품했는데 이것을 공짜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민사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그런데 이게 을로부터 거래 계약관계가 계속 이어졌을 때 이후 거래가 다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정책관 선중규 또 그

을은 그것을 재하도급 줘서……

○김종민 위원 그런데 동일한 유형의 계약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요? 그거 연관돼서 다른 변형된 계약이면 모르겠는데 그 동일한 계약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민병덕 위원 동의로 다 이어져도, 민사에서도 이런 경우는 흔하게 있잖아요. 제삼자가 선의나 악의냐에 따라서 그 이후로는 끊어지고 악의면 계속 무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민법에서도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선의의 제삼자, 즉 모르는 제삼자는 보호하고 알았던 악의의 제삼자는 보호하면 안 되잖아요, 공범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그런데 알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이용한 제삼의 수급사업자인데요. 계약관계를 무효로 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민사적으로 제재하는 방안도 있지만 제삼의 수급사업자가 얻은, 그러니까 을'가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에서 피해 기업이, 기술을 빼앗긴 기업이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민병덕 위원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손해액을 청구해요? 을'한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을'한테 청구할 수 없으면 이걸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부분일 뿐이지 기술유용행위라는 것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그러니까 을'가 알면서 갑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넘겨받았다면 공동불법행위니까 연대책임을 지지 않나요?

○민병덕 위원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그러니까 갑이든 을'든 을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공정위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

○민병덕 위원 갑하고 을'한테 공동불법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을'도 안 할 거다?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그래서……

○민병덕 위원 그렇지만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의 용역계약 자체까지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정책관 선중규 그렇게 해서 피해액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민병덕 위원 그렇게 구성해도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윤한홍 물론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지요. 있

는데, 거기에 따른 현실에서 추가적인 연쇄 계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한 고민이에요.

○민병덕 위원 이해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손해액을 제대로 산정하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미 지나갔다고 해서 손해액을 가능하면 축소해서 산정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제대로 충분히 손해액이 다 산정이 돼서 기술을 뺀 조그만 업체에 그 손해액이 다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기술 탈취한 게 큰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들의 힘에 의해서 손해액을 여러분들이 축소해서 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제일 높고 그것을 막도록 하는 조치를 여기다 넣는 게 더 급선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손해액을 100%가 아니라 200%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장치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지요. 왜냐하면 그게 잘 되면 무효화 요구를 안 해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해서 3배수를 5배수로 올리겠다는 말씀이고요.

○소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그걸 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그런데 이것은 또 민사의 영역이라서.

○소위원장 윤한홍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보면 기술탈취 기업이 손해 봤다는 게 제대로 산정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으면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 보완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부대의견으로 다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김종민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렇게 하고 1번·2번은……

○최승재 위원 저도 2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윤한홍 예, 말씀하세요.

○최승재 위원 나머지 대부분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저도 설득을 좀 했으면 좋겠거나 부대의견을 넣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전속고발권 관련된 부분은 공정위도 아시겠지만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얘기잖아요. 지난번 소위에서도 나왔던 건데, 하도급법 기술유포 관련

특수성 감안한다는 얘기는 나왔지만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 게 이 기술유포 관련해서 사실은 작은 기업들이 시간이 지나면 거의 망하고 거의 소멸되고 나중에 해결이 된다 치더라도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회복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공정위에서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손해 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손해 배상받거나 손해 보상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사실 전속고발에 관련된 부분들의 사례를 보면 공정위에서 전속고발에 관련된 부분들이 제대로 실효성이 없다, 사실 전속고발 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역대 공정거래위원장도 전속고발의 폐지에 관련된 부분들 갖고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관련해서 다른 수사·기소에 관련된 부분보다 더 위법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갖고 하는 문제는 있는데 그것이 너무 한곳에서만 폐쇄성을 갖고 하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붙잡고 있는 자체가…… 과거에 사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저는 과거부터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도리어 지금은 비난의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속고발도 이루어지고 전문성을 갖고 다른 곳에서도, 꼭 공정거래위만 전속고발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속고발 폐지라는 부분보다도 병행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기술유포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폐해를,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2번 항목은 공정위가 찬성을 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개정안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3번·4번 부분은 논의한 결과대로 일부 수정할 건 수정하고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용훈 위원장님, 방금 부대의견 말씀하셨는데요.

○소위원장 윤한홍 부대의견은 시행령 쪽에 손해액 산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술을 탈취당한 기업 위주로 손해액이 산정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시행령에.

○전문위원 최용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술유용으로 인한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관한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하위 법령에 반영하도록 한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요 다음 법률안 개정 또 올라옵니다, 이거 무효화하자고. 그리고 전속고발권 폐지하자고 법률안 또 올라와요. 그거 공정위에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육성권 예, 알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부대의견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게 위반행위를 알면서 그 기술을 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없다면……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알면서 쓴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 최용훈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게 공정위 의견에 따르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를 통해서, 이런 계약이 아닌 이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통한 법률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사실행위를 통해서 이런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을 넣기 어렵다?

○전문위원 최용훈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일반적인 입법례도 계약 등을 통한 사업자 간의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는 많은데 제삼자까지, 특히 사실행위까지 포함되는 부분은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금전적인 부분, 손해액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를 하고 그게 부족해지면 다음 법률적인 단계로 가는 게 저는,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의결하시지요. 그것만 해도 진일보한 거라고 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9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

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가맹사업법은……

○소위원장 윤한홍 그게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해도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해도 결과가 나오기 어려워요. 시간이 없고 또 위원님 몇 분이……

○민병덕 위원 아니, 의견은 들어 봐야 되잖아요. 쟁점이 뭔지는 들어 봐야지……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들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안 돼요.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다음 회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병덕 위원 다음 언제 하는데요?

○김종민 위원 다음 전체회의 전에 한번 하시지요.

○소위원장 윤한홍 그래요. 한번 그것 의논해 볼게요.

○민병덕 위원 다음 그걸 잡아 주세요. 저는 지난번에 하려고 왔다가 또 오늘 하려고 왔다가……

○소위원장 윤한홍 아니, 지난번에 가맹점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많이 의결했지 않습니까, 지난 소위에서?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민병덕 위원 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가장 핵심은 지금……

○소위원장 윤한홍 그때 가맹점에 대한 보호규정의 거의 99%가 다 됐어요.

○민병덕 위원 가맹점에서 가장 핵심은……

○소위원장 윤한홍 지금 하나가 남은 게 단체협상권 하나 남았거든요.

○민병덕 위원 단체협상권이 가장 핵심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아니, 지난번에……

○민병덕 위원 단체협상을 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소위원장 윤한홍 그래요,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민병덕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는 다음 소위 날짜라도 잡아 주셔야지요……

○소위원장 윤한홍 지난 소위에서 충분히 해 가

지고 99%가 반영이 돼서 법안이 통과됐어요.

○민병덕 위원 아니,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니깐요,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소위원장 윤한홍 우리 지난주에 다 했어요.

○민병덕 위원 지난주에 안 했지요.

○소위원장 윤한홍 가맹점 보호는 거의 다 됐습니다. 단체협상권 하나 남았어요.

○민병덕 위원 단체협상권과 관련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가맹사업법에서는 지금 논의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위원장 윤한홍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 ○출석 위원(10인)

|       |       |       |       |
|-------|-------|-------|-------|
| 강 훈 식 | 김 중 민 | 민 병 덕 | 박 성 준 |
| 송 석 준 | 양 정 숙 | 윤 영 덕 | 윤 한 홍 |
| 최 승 재 | 최 중 윤 |       |       |

#### ○청가 위원(1인)

윤 창 현

#### ○출석 전문위원

|             |       |
|-------------|-------|
| 수 석 진 문 위 원 | 고 상 근 |
| 전 문 위 원     | 최 용 훈 |
| 전 문 위 원     | 권 태 현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공정거래위원회

|           |       |
|-----------|-------|
| 사 무 처 장   | 육 성 권 |
| 기 획 조 정 관 | 전 성 복 |
| 소비자정책국장   | 박 세 민 |
| 기업협력정책관   | 선 중 규 |
| 심 판 관 리 관 | 안 병 훈 |

국민권익위원회

|             |       |
|-------------|-------|
| 부위원장겸사무처장   | 정 승 윤 |
| 심 사 보 호 국 장 | 권 석 원 |
| 국세청조사기획과장   | 박 근 재 |